

#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LP Gas Cylinder Valves with Cut-off Function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15년 11월 20일

산업통상자원부 승인 : 2015년 12월 10일



##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

**위 원 장**

하 동 명 : 세명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

양 영 명 : 한국가스공사 기술본부 기술본부장

**당 연 직**

조 웅 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

박 장 식 :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

**고압가스분야**

윤 기 봉 : 중앙대학교 교수

하 동 명 : 세명대학교 교수

문 일 : 연세대학교 교수

권 혁 면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

김 창 기 :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

남 승 훈 : 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

박 두 선 : 대성산업가스(주) 전무이사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

이 창 언 : 인하대학교 교수

이 순 결 : 경희대학교 교수

신 미 남 : (주)두산퓨얼셀 사장

박 성 식 : LP가스판매중앙회 감사

변 수 동 : 큐 베스트 대표이사

**도시가스분야**

이 수 경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

고 재 육 : 광운대학교 교수

이 광 원 : 호서대학교 교수

양 영 명 : 한국가스공사 기술본부 기술본부장

김 종 남 :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

김 광 섭 : (주)대륜 E&S 상무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5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## KGS Code 제·개정 이력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목코드번호 | KGS AA312 2015                     |
| 코 드 명  |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|

| 제·개정일자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08.12.30 | 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-379호)   |
| 2009. 5.15 | 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193호)   |
| 2009. 6.29 | 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250호)   |
| 2010. 1. 6 | 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480호)   |
| 2012. 6.26 | 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-313호)   |
| 2013.12.31 | 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-353호) |
| 2015. 8. 7 | 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436호) |
| 2015.12.10 | 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641호) |
|            | - 이 하 여 백 -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일반사항 .....            | 1 |
| 1.1 적용범위 .....           | 1 |
| 1.2 기준의 효력 .....         | 1 |
| 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      | 1 |
|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.....  | 1 |
|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..... | 2 |
| 1.4 용어정의 .....           | 2 |
| 1.5 기준의 준용 .....         | 3 |
| 2. 제조시설기준 .....          | 3 |
| 2.1 제조설비 .....           | 3 |
| 2.2 검사설비 .....           | 3 |
| 3. 제조기술기준 .....          | 4 |
| 3.1 설계(내용 없음) .....      | 4 |
| 3.2 재료 .....             | 4 |
| 3.3 두께(내용 없음) .....      | 4 |
| 3.4 구조 및 치수 .....        | 4 |
| 3.4.1 구조 .....           | 4 |
| 3.4.2 치수 .....           | 4 |
| 3.5 가공(내용 없음) .....      | 5 |
| 3.6 용접(해당 없음) .....      | 5 |
| 3.7 열처리(해당 없음) .....     | 5 |
| 3.8 성능 .....             | 5 |
| 3.8.1 제품성능 .....         | 5 |
| 3.8.2 재료성능 .....         | 5 |
| 3.8.3 작동성능 .....         | 6 |
| 3.9 표시 .....             | 7 |
| 3.9.1 제품표시 .....         | 7 |
| 3.9.2 합격표시 .....         | 7 |
| 3.9.3 설명서 첨부 .....       | 8 |

|  |    |
|--|----|
| 4.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4.1 검사종류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2.1 심사 신청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2.2 심사 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2.3 판정위원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3 검사항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4. 검사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4.5 그 밖의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
|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 .....                    | 19 |
| 4.5.2 검사일부 생략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
| 4.5.3 불합격 제품 폐기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9 |
| 5. 재검사기준(해당 없음)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6.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부록 A 고압가스 용기밸브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..... | 21 |

##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LP Gas Cylinder Valves with Cut-off Function)

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에 부착되는 부속품 중 내용적 3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가스충전구에서 압력조정기의 체결을 해제할 경우 가스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구가 내장된 용기밸브(이하 “용기밸브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15.8.7>

#### 1.2 기준의 효력

1.2.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(안건번호 제2015-9호, 2015년 11월 20일)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641, 2015년 12월 10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1.2.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10의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1.3.1.1 규칙 별표 10의2 제4호다목에 따라 용기밸브이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,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밸브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밸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3.1.2 용기밸브가 표 1.3.1.2의 인정규격에 따라 해당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1.3.1.1에 따라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보아 검사특례 신청 · 심사 없이 해당 인정규격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표 1.3.1.2 외국용기의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 &lt;개정 12.6.26&gt;

| 인정기준   | 공인검사기관   |
|--|--|
| CGA  | -  |
| TPED(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) | EC(European Commission)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(Notified Body) |
| 고압가스보안법  |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·보안원, 고압가스보안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<개정 12.6.26>

**1.3.2.1**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“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” 이란 표 1.3.1.2에 따른 외국 용기의 인정기준을 말한다.

**1.3.2.2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표 1.3.1.2의 인정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.

## 1.4 용어정의

이)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.4.1** “용기”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(부속품을 포함한다)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**1.4.2** “내압시험압력”이란 용기밸브의 내압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압력으로서 3.0 MPa(내력비가 0.5 이하의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조한 용기에 부착하는 용기밸브는 2.7 MPa)의 압력을 말한다.

**1.4.3** “기밀시험압력”이란 용기밸브의 기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압력으로서 1.8 MPa의 압력을 말한다.

**1.4.4** “상시품질검사”란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5** “정기품질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또는 완성된 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6** “공정확인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1.4.7 “수시품질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1.4.8 “종합품질관리체계검사”란 제품의 설계·제조 및 자체검사 등 용기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1.4.9 “형식”이란 구조·재료·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.

1.4.10 “공정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.

## 1.5 기준의 준용

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기밸브의 모양·차수 등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2. 제조시설기준

### 2.1 제조설비

용기밸브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(제조하는 용기밸브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)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- (1) 단조설비
- (2) 표면처리설비 및 초음파세척설비
- (3) 구멍가공기·외경절삭기·내경절삭기·나사전용가공기·바니싱가공기등 공작기계설비
- (4) 조립설비
- (5) 그 밖에 용기밸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2.2 검사설비

용기밸브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(제조하는 용기밸브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)는 다음과 같다.

- (1) 내압시험설비
- (2) 기밀시험설비
- (3) 나사케이지·버어너리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

- (4) 성능시험기
- (5) 표준이 되는 압력계
- (6) 그밖에 용기밸브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3. 제조기술기준

#### 3.1 설계(내용 없음)

#### 3.2 재료

용기밸브의 재료는 그 용기밸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S B 6212(액화석유가스 용기용밸브)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 3.3 두께(내용 없음)

#### 3.4 구조 및 치수

용기밸브는 그 용기밸브의 안전성 · 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## 3.4.1 구조

3.4.1.1 외관은 다듬질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· 금 · 주름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3.4.1.2 용기밸브의 스프링 지지방법은 플리그형 또는 캡형인 것으로 한다.

3.4.1.3 용기밸브는 그랜드너트가 없는 구조 또는 그랜드너트를 핀 등으로 고정한 구조로 한다.

3.4.1.4 용기밸브는 밸브핸들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용개폐기구를 사용하여 개폐하는 구조로 한다.

##### 3.4.2 치수

3.4.2.1 치수는 KS B 6212(액화석유가스 용기용밸브)의 5. V2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가스충전구의 내부각도 및 길이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(1) 가스충전구의 내부 각도는  $(30\sim70)^\circ$  이내일 것

(2) 충전구의 길이는 충전건이 걸리는 밸브 목 부위에서 충전구 시작부까지 55.2 mm를 넘지 않을 것

### 3.5 가공(내용 없음)

### 3.6 용접(해당 없음)

### 3.7 열처리(해당 없음)

## 3.8 성능

용기밸브는 그 용기밸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1 제품성능

#### 3.8.1.1 내압성능

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·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2 기밀성능

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3 내한성능

용기밸브를  $-30^{\circ}\text{C}$ 의 공기 중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10분 이내에 3.8.1.2 및 3.8.3.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4 내열성능

용기밸브를 연 상태로  $130^{\circ}\text{C}$ 의 공기 중에서 30분간 방치하고 상온으로 내린 후 3.8.3.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5 내구성능

차단기구를 1 000회 이상 반복 조작한 후 3.8.1.2 및 3.8.3.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6 내진동성능

$1.8 \text{ MPa}$ 의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가한 상태에서 진동수 2 000 회/min, 전진폭 2  $\text{mm}$ 로 상하, 좌우 및 전후 3방향으로 각각 30분간 진동시킨 후 누출,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2 재료성능

#### 3.8.2.1 인장성능

재료의 인장강도는  $313.6 \text{ N/mm}^2$  이상이고 연신율은 15 % 이상인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2 내기스성능

가스가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비금속재료는 ( $23 \pm 2$ ) °C의 시험조건에서 노말헥산(100 %)에 담구어 70시간 유지 후 질량변화율이  $\pm 10\%$  이내이고 체적변화율은 (-1~+25) % 이내로서 사용상 지장을 주는 취성화, 팽윤, 연화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3 내강구충격성능

밸브본체 측면부 및 핸들 중앙 상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1.5 kg의 강구를 낙하한 후 3.8.1.2 및 3.8.3.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4 오링내미열 성능

0.7 MPa의 공기압을 가한 상태에서 핸들을 2바퀴( $720^\circ$ ) 이상, 개폐를 (10~15) 회/min의 속도로 5 000회 반복 실시한 후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 3.8.3 작동성능

### 3.8.3.1 밸브성능

3.8.3.1.1 안전밸브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- (1)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원활히 작동할 것
- (2) 그랜드네트에 밸브의 개폐를 위한 나사가 되어 있는 구조의 것은 그랜드네트가 펀 또는 네트 등에 의하여 밸브몸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

3.8.3.1.2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.

3.8.3.1.3 안전밸브의 분출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.

$$Q=0.01154V(10P \times 14.223 + 14.70)$$

여기에서

$Q$  : 분출량( $m^3/h$ )

$V$  : 용기내용적(L)

$P$  : 취출량 결정압력으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한 분출개시압력(MPa)

$$(내압시험압력 \times 0.8 \times 1.2 = \text{분출개시압력} \times 1.2)$$

### 3.8.3.2 차단성능

용기밸브에 공급하는 압축공기의 압력범위를 0.07 MPa 이상 1.5 MPa 이하로 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3.8.3.2.1 가스충전구에 압력조정기(금구부착 트윈호스 포함)를 체결하였을 때 차단기구가 열리고, 가스충전구에서 분리하였을 때 차단기구가 닫히는 것으로 한다.

3.8.3.2.2 차단기구가 작동한 후 누출량은 1.1 L/h 이하인 것으로 한다.

3.8.3.2.3 밸브에 조정기 등을 연결하여 차단기구가 열렸을 때 연결부에서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3.3 충전성능

42 L의 물을 압력이 1 MPa 되도록 용기에 충전하였을 때 충전시간은 70초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3.4 핸들개폐 토크성능

3.8.3.4.1 핸들 열림 토크시험은 밸브에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며, 최소 22 N · m의 토크에서 손상이 없고 시험 후 3.8.1.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3.8.3.4.2 핸들 닫힘 토크시험은 밸브에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며, 최소 20 N · m의 토크에서 손상이 없고 시험 후 3.8.1.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 3.9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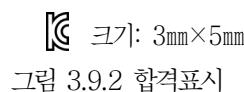
### 3.9.1 제품표시

규칙 별표 24 제2호 및 규칙 별표 10의2 제2호에 따라 용기밸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밸브의 보기쉬운 곳에 (1)에서 (5)까지의 사항을 각인하고 (6)과 (7)의 사항을 표시한다. 다만, 각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밸브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밸브에 대한 각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- (1)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
- (2) 용기밸브의 기호(LPG)와 번호
- (3) 질량(기호 : W, 단위 : kg)
- (4) 검사에 합격한 연월
- (5) 내압시험압력(기호: TP, 단위 : MPa)
- (6) 용기밸브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(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“열림↔닫힘” )
- (7) 핸들에는 회색으로 도색하고 차단기능형 밸브임을 표시

### 3.9.2 합격표시

규칙 별표 25 제1호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용기밸브에 대하여는 그림 3.9.2와 같이 "C"자의 각인을 한다. <개정 09.5.15>



### 3.9.2.1 제품확인검사 대상

검사에 합격한 용기밸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직접 각인을 하거나 제조자가 각인하는 것을 입회·확인 한다.

### 3.9.2.2 공정검사 대상

3.9.2.1 또는 다음에 따라 각인을 한다.

- (1) 용기밸브 제조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각인을 불출받아 제조공정 중에 각인을 한다.
- (2) 용기밸브 제조자는 매월 각인횟수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며,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2년간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.
- (3) (2)에 따른 허위 통보를 하는 경우나 정기품질검사·공정확인심사·수시품질검사 또는 종합품질관리 체계심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한다.

### 3.9.3 설명서 첨부

사용 시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첨부한다.

## 4. 검사기준

### 4.1 검사종류

용기밸브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용기밸브를 제조하려는 자가 용기밸브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 실시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용기밸브의 신규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##### 4.1.2.1 설계단계검사

규칙 별표 10의2 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받는다.

- (1) 용기밸브의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밸브를 처음 제조하는 경우
- (2)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밸브를 처음 수입하는 경우
- (3)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밸브의 구조,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
- (4) 용기밸브 제조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
##### 4.1.2.2 생산단계검사

용기밸브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용기밸브 제조자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표 4.1.2.2에 따른 제품확인검사·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4.2에 따른 공정검사 대상 심사를 받는다.

표 4.1.2.2 생산단계검사의 종류 및 주기

| 종류         |            | 주기        | 대상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(1) 제품확인검사 | 상시품질검사     | 신청 시마다   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2) 생산공정검사 | 정기품질검사     | 3개월에 1회   | 제조공정 ·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       |
|            | 공정확인심사     | 3개월에 1회   |   |
|         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1년에 2회 이상 |   |
| (3) 종합공정검사 |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| 6개월에 1회   | 공정 전체(설계 · 제조 · 자체 검사)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 할 수 있는 품목 |
|         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1년에 1회 이상 |   |

**4.1.2.2.1** 제품확인검사는 상시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**4.1.2.2.2** 생산공정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 · 공정확인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수시품질검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3) 생산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**4.1.2.2.3** 종합공정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3)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##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

### 4.2.1 심사 신청

부록 A(고압가스 용기밸브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)에 따라 용기밸브를 제조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고, 이를 증명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용기밸브 제조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4.2.2 심사 방법

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**4.2.2.1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록 A(고압가스 용기밸브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)에 따라 공정확인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.2.3에 따른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**4.2.2.2** 판정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심사결과서를 심의하여 용기밸브 제조자가 생산공정 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

**4.2.2.3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용기밸브 제조업체에 대하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.

**4.2.2.4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용기밸브 제조업체에 대하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부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.

#### **4.2.3 판정위원회**

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판정위원회를 둔다.

**4.2.3.1**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4.2.3.2** 위원은 가스안전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운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**4.2.3.3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**4.3 검사항목**

#### **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**

제조자가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2.1에 따른 제조시설 구비여부
- 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구비여부

#### **4.3.2 제품에 대한 검사**

용기밸브가 이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 **4.3.2.1 설계단계검사**

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설계단계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4.4.2.1.2(1)에 따른 외관검사
- (2) 4.4.2.1.2(2)에 따른 구조 및 치수 검사
- (3) 4.4.2.1.2(3)에 따른 제품성능검사
- (4) 4.4.2.1.2(4)에 따른 재료성능검사
- (5) 4.4.2.1.2(5)에 따른 작동성능검사
- (6) 4.4.2.1.2(6)에 따른 표시사항 확인

##### **4.3.2.2 생산단계검사**

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생산단계검사의 검사종류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 4.3.2.2.1 제품확인검사(상시품질검사)

- (1) 4.4.2.2.1(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- (2) 4.4.2.2.1(2-2)에 따른 외관검사
- (3) 4.4.2.2.1(2-3)에 따른 내압성능검사
- (4) 4.4.2.2.1(2-4)에 따른 기밀성능검사
- (5) 4.4.2.2.1(2-5)에 따른 밸브성능검사
- (6) 4.4.2.2.1(2-6)에 따른 차단성능검사

#### 4.3.2.2 생산공정검사

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- (1-1) 4.4.2.2.2(1-2-1)에 따른 밸브성능검사
- (1-2) 4.4.2.2.2(1-2-2)에 따른 차단성능검사

##### (2) 공정확인심사

공정확인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.2(2)에 따른다.

표 4.3.2.2.2(2) 공정확인심사와 종합품질체계심사의 심사항목 <개정 15.12.10>

| 구분   | 판정기준                  | 적용여부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정확인<br>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품질<br>체계심사 |
| 일반사항 | 조직                    | 적정한 기술적·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품질시스템                 |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인적자원                  |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시설·장비        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설계   | 설계·개발        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템 확보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잠재적 고장영향분석,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 결과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설계·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제조   | 구매                    |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생산           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실행증명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예방 및 예측 보전, 생산지 공구 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|      |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| o  | o            |
| 자체검사 | 검사방법                  |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차 유지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|

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및 절차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 수준 유지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o |
|      | 측정 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소급 성 유지,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| o                     | o |
|      |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o |
|      | 검사기관의 운영요건(ISO 17020)에 준하는 시스템의 운영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o |
|      | 내부감사  |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| o |
| 의무   | 합격표시  |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| o |
|      | 안전관리  |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 제품 유통 방지 | o |
| 기타   |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   | o |

### (3) 수시품질검사

- (3-1) 4.4.2.2.2(3-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- (3-2) 4.4.2.2.2(3-2-2)에 따른 외관검사
- (3-3) 4.4.2.2.2(3-2-3)에 따른 내압성능검사
- (3-4) 4.4.2.2.2(3-2-4)에 따른 기밀성능검사

### 4.3.2.2.3 종합공정검사

#### (1) 종합품질체계심사

종합품질체계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.2(2)에 따른다.

#### (2) 수시품질검사

- (2-1) 4.4.2.2.3(2-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- (2-2) 4.4.2.2.3(2-2-2)에 따른 외관검사
- (2-3) 4.4.2.2.3(2-2-3)에 따른 내압성능검사
- (2-4) 4.4.2.2.3(2-2-4)에 따른 기밀성능검사

## 4.4. 검사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2.1 및 2.2에 따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설비를 모두 구비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용기밸브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에 따른 제조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.

#### 4.4.2.1 설계단계검사

설계단계검사는 용기밸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#### 4.4.2.1.1 설계단계검사의 시험품 수량은 표 4.4.2.1.1과 같다.

표 4.4.2.1.1 시험품의 수량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수 량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용기밸브               | 3개   |
| 안전밸브, 오링, 시이트 등 부품 | 각 1개 |

#### 4.4.2.1.2 설계단계검사는 4.3.2.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요령에 따라 실시한다.

##### (1) 외관검사

외관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, 흠, 마모, 변형, 주름, 갈라짐, 나사의 손상, 접합부의 헐거움 및 오물의 부착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(1-1) 용기밸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에 대하여 실시하되, 이상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부품을 떼어내고 실시할 수 있다.

(1-2) 육안 또는 확대경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
##### (2) 구조 및 치수 검사

용기 밸브의 구조 및 치수가 3.4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##### (3) 제품성능검사

###### (3-1) 내압성능검사

내압성능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밸브몸통이나 그 밖의 부분에서 물의 누출(사용 상태에 있어서 패킹을 부착한 부분에서의 누출은 제외한다), 이상팽창, 변형 및 그 밖의 손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(3-1-1) 용기밸브의 가스입구, 출구 및 그 밖의 개구부에 맹판을 붙이고 밸브를 개방한 상태 또는 필요에 따라 부품을 떼어낸 상태에서 밸브몸통이나 그 밖의 부분에 가압하여 실시한다.

(3-1-2) 내압시험에는 물을 사용하며 밸브 몸통내에 물을 가득 채워서 공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을 서서히 가한다. 이 경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밸브[내압시험압력 (MPa)과 내용적 (m)<sup>3</sup>의 곱이 0.01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]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(3-1-3) 내압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초 이상 해당 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한다.

###### (3-2) 기밀성능검사

기밀시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밸브몸통, 밸브시트, 덮개, 그랜드네트부 및 안전밸브에서의 누출 등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(3-2-1) 기밀시험에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.

(3-2-2)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용기밸브의 가스입구부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기하고, 다음에 밸브를 연 상태에서 용기밸브(안전밸브는 제외)의 가스입구, 출구 및 그 밖의 개구부에 맹판을 붙여 그 입구 또는 출구에서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기하여 실시한다.

(3-2-3) 기밀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초 이상 해당 시험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한다.

(3-2-4) 누출 등의 점검은 용기밸브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조에 담그거나 또는 용기밸브에 발포액 등을 도포하여 확인한다.

###### (3-3) 내한성능검사

용기밸브의 내한 성능에 대하여 3.8.1.3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3-4) 내열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내열 성능에 대하여 3.8.1.4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3-5) 내구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내구 성능에 대하여 3.8.1.5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3-6) 내진동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내진동 성능에 대하여 3.8.1.6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4) 재료성능검사****(4-1) 인장성능검사**

인장성능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 3.8.2.1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(4-1-1)** 시험편은 벨브몸통 성형 후 또는 제조(용기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후 같은 생산 단위로 제조된 용기밸브의 벨브몸통 중에서 임의로 채취한 1개의 용기밸브몸통의 적당한 부분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시험편을 채취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용기밸브는 그 재료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용기밸브에서 채취한 시험편에 갈음할 수 있다.

**(4-1-2)** 시험편은 KS B 0801(금속재료 인장시험편)에 규정한 형상 및 치수로 다듬질한다.

**(4-1-3)** 시험방법은 KS B 0802(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)에 따른다.

**(4-2) 화학성분검사**

화학성분검사는 KS 규격에 정해진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화학분석법(기기분석법을 포함한다)에 따라 실시한다.

**(4-3) 내가스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내가스 성능에 대하여 3.8.2.2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4-4) 내강구 충격성능검사**

내강구 충격성능에 대하여 3.8.2.3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4-5) 오링 내마멸성능검사**

오링 내마멸 성능에 대하여 3.8.2.4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5) 작동성능검사****(5-1) 벨브성능검사**

밸브 성능검사는 3.8.3.1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(5-1-1)** 벨브의 개폐조작은 벨브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동에 의한 개폐조작이 원활하고, 이상한 저항, 공전 및 흔들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(5-1-2)** 그랜드너트의 벨브몸통과의 고정상태를 점검하고, 펀 또는 너트 등에 의하여 벨브 몸통에 고정된 그랜드너트에 [75~80(내용적 5 L 이하의 용기에 사용하는 벨브는 50~55)] N·m정도의 회전력(토크)을 가하여 당해 그랜드너트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**(5-1-3)**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로 압력을 서서히 기울 때 용기 내압시험압력의 8/1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(열림)되고 또한 복원(닫힘)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작동개시 압력 및 닫힘(복원)압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, 닫힘(복원)의 확인은 발포액을 도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**(5-2) 차단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차단성능에 대하여 3.8.3.2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5-3) 충전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충전성능에 대하여 3.8.3.3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5-4) 핸들개폐 토크성능검사**

용기밸브의 핸들개폐 토크 성능에 대하여 3.8.3.4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6) 표시사항 확인**

용기밸브의 표시사항이 3.9.1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**(7) 그 밖에 설계단계검사방법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**

**4.4.2.1.3 합부판정**

4.4.2.1.1에 따라 채취한 시험품이 4.4.2.1.2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**4.4.2.2 생산단계검사**

생산단계검사는 용기밸브가 제조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.

**4.4.2.2.1 제품확인검사**

**(1) 샘플링**

제품확인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**(1-1)** 동일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그 크기 및 형상이 동일한 제품을 1조로 한다.

**(1-2)** (1-1)의 기준에 의하여 형성된 조에서 채취하는 시료의 수는 표 4.4.2.2.1과 같이 하고 시료채취방법은 임의로 채취하는 샘플링 방식으로 한다.

표 4.4.2.2.1 시료 채취 수

| 1조를 형성하는 수 | 10개 이하 | 11개 이상<br>100개 이하 | 101개 이상<br>300개 이하 | 301개 이상<br>700개 이하 | 701개 이상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채취수        | 전수     | 10개               | 15개                | 20개                | 25개     |

**(2) 검사요령**

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.

**(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**

용기밸브가 3.4 및 3.9.1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4.4.2.2.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다. <개정 09.6.29>

**(2-2) 외관검사**

외관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, 흡, 마모, 변형, 주름, 갈라짐, 나사의 손상, 접합부의 헐거움 및 오물의 부착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(2-2-1)** 용기밸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에 대하여 실시하되, 이상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부품을 떼어내고 실시할 수 있다.

**(2-2-2)** 육안 또는 확대경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
**(2-3) 내압성능검사**

내압성능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밸브몸통이나 그 밖의 부분에서 물의 누출(사용 상태에 있어서 패킹을 부착한 부분에서의 누출은 제외한다), 이상팽창, 변형 및 그 밖의 손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(2-3-1)** 용기밸브의 가스입구, 출구 및 그 밖의 개구부에 맹판을 붙이고 밸브를 개방한 상태 또는 필요에 따라 부품을 떼어낸 상태에서 밸브몸통이나 그 밖의 부분에 가압하여 실시한다.

(2-3-2) 내압시험에는 물을 사용하며 밸브 몸통내에 물을 가득 채워서 공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을 서서히 가한다. 이 경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밸브[내압시험압력 (MPa)과 내용적 ( $m^3$ )의 곱이 0.01 이하의 것에 한정한대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(2-3-3) 내압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초 이상 해당 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한다.

#### (2-4) 기밀성능검사

기밀시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밸브몸통, 밸브시트, 덮개, 그랜드너트부 및 안전밸브에서의 누출 등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(2-4-1) 기밀시험에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.

(2-4-2)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용기밸브의 가스입구부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하고, 다음에 밸브를 연 상태에서 용기밸브(안전밸브는 제외)의 가스입구, 출구 그 밖의 개구부에 맹판을 붙여 그 입구 또는 출구에서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실시한다.

(2-4-3) 기밀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초 이상 해당 시험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한다.

(2-4-4) 누출 등의 점검은 용기밸브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조에 담그거나 용기밸브에 밸포액등을 도포하여 확인한다.

#### (2-5) 밸브성능검사

밸브성능검사는 3.8.3.1과 (2-5-1)부터 (2-5-3)까지를 만족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(2-5-1) 밸브의 개폐조작은 밸브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동에 의한 개폐조작이 원활하고, 이상한 저항, 공전 및 흔들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(2-5-2) 그랜드너트의 밸브몸통과의 고정상태를 점검하고, 펀 또는 너트 등에 의하여 밸브 몸통에 고정된 그랜드너트에 [75~80(내용적 5 L 이하의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50~55)] N·m정도의 회전력(토크)을 가하여 해당 그랜드너트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(2-5-3)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공기 또는 질소등의 불활성가스로 압력을 서서히 가할 때 용기 내압시험압력의 8/1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(열림)되고 또한 복원(닫힘)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작동개시 압력 및 닫힘(복원)압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, 닫힘(복원)의 확인은 밸포액을 도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#### (2-6) 차단성능검사

용기밸브의 차단성능에 대하여 3.8.3.2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
(2-7) 그 밖에 제품확인검사방법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#### (3) 합부판정

(1)의 기준에 따라 채취한 시료가 (2-1)부터 (2-7)까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합격한 것으로 보고, 그 중 어느 하나에 부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.

#### 4.4.2.2 생산공정검사

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###### (1-1) 샘플링

정기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(1)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###### (1-2) 검사요령

(1-2-1) 밸브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5)에 따른다.

(1-2-2) 차단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6)에 따른다.

**(1-3) 합부판정**

(1-3-1) 용기밸브가 (1-2-1) 및 (1-2-2)의 검사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(1-3-2) 용기밸브가 (1-2-1) 및 (1-2-2)의 검사 중 어느 하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,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,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1-3-3) 용기밸브의 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**(2) 공정확인심사**

(2-1) 부록 A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) 공정확인심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,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,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2-3) 용기밸브의 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**(3) 수시품질검사****(3-1) 샘플링**

수시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(1)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**(3-2) 검사요령**

(3-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1)에 따른다.

(3-2-2) 외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2)에 따른다.

(3-2-3) 내압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3)에 따른다.

(3-2-4) 기밀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4)에 따른다.

**(3-3) 합부판정**

(3-3-1) 용기밸브가 (3-2-1)부터 (3-2-4)까지의 검사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3-3-2) 용기밸브가 (3-2-1)부터 (3-2-4)까지의 검사 중 어느 하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,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3) 용기밸브의 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**4.4.2.2.3 종합공정검사****(1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**

(1-1) 부록 A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1-2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,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,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1-3) 용기밸브의 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합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**(2) 수시품질검사****(2-1) 샘플링**

수시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(1)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**(2-2) 검사요령**

- (2-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1)에 따른다.
- (2-2-2) 외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2)에 따른다.
- (2-2-3) 내압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3)에 따른다.
- (2-2-4) 기밀성능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4)에 따른다.
- (2-3) 합부판정
  - (2-3-1) 용기밸브가 (2-2-1)부터 (2-2-4)까지의 검사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  - (2-3-2) 용기밸브가 (2-2-1)부터 (2-2-4)까지의 검사 중 어느 하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밸브 제조사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,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  - (2-3-3) 용기밸브의 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합공정검사를 재신청 할 수 있다.

## 4.5 그밖의 검사기준

###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

### 4.5.2 검사일부 생략 <개정 12.6.26>

#### 4.5.2.1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제품

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한 용기에 대하여 표 1.3.1.2에 따른 해당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합격증빙서류(CGA · ANSI 기준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성적서)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용기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13.12.31>

- (1) 재료성능검사
- (2) 내압성능검사. 다만, 내압시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는 검사실시
- (3) 기밀성능검사. 다만, 기밀시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는 검사실시

#### 4.5.2.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제품

4.5.2.2.1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용기밸브가 규칙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표 1.3.1.2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4.5.2.1에 따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내압성능검사 및 기밀성능검사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내압성능검사 및 기밀성능검사를 실시한다.

### 4.5.2.2 <삭제 12.6.26>

#### 4.5.3 불합격 제품 폐기방법

규칙 별표 23 제1호에 따라 불량용기밸브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.

**4.5.3.1** 불합격 된 용기밸브에 대하여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 원형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한다.

**4.5.3.2** 폐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밸브 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.

## 5. 재검사기준(해당 없음) <신설 10.1.6>

## 6.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<신설 10.1.6>

### 6.1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

규칙 제9조의2 제1항제5호 및 규칙 별표 10의2 제4호나목에 따라 표 6.1과 같이 인정기준으로 제조하여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용기밸브에 대하여는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한다.

표 6.1 국가별 인정기준과 공인검사기관 <개정 12.6.26>

| 인정기준   | 공인검사기관   |
|--|--|
| CGA  | —  |
| TPED(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) | EC(European Commission)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(Notified Body) |
| 고압가스보안법  |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·보안원, 고압가스보안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부록 A 고압가스 용기밸브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

| 1. 서문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<p>가. 이 기준은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통해서 용기부속품을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.</p> <p>나. 이 기준은 일반사항, 설계, 제조, 자체검사, 의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용기부속품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이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.</p> |
| 2. 일반사항 <개정 15.12.10> |  |
| 가. 조직           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  | 고객 및 법적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· 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공정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    | <p>설계 과정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장형태 등을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연구 · 개발 조직을 보유해야 한다.</p> <p>(가) 연구 · 개발책임자 및 인력<br/>(나) 연구 · 개발에 필요한 적정 설비 및 장비</p>  |
| 나. 품질시스템        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수립,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  |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,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                   | <p>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,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수립<br/>(나) 경영검토(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제품의 개선)의 수행</p>   |
| (4)<br>15.12.10<br>>  | <p>품질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.</p> <p>(가) 문서의 승인, 검토, 개선 및 재승인<br/>(나) 문서의 식별(최신본, 외부출처 문서 등) 및 배포 관리<br/>(다) 효력 상실 문서의 오사용 방지</p>   |
| 다. 인적자원         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  | <p>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, 교육훈련, 숙련도 및 경력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제조업소는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인원에 대한 적격성 결정 수행<br/>(나)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공 및 효과성 평가<br/>(다) 적격성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    | 제품의 설계 · 개발에 책임을 가진 인원의 경우 설계 · 개발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적용할 도구 및 기법에 숙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리.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  | <p>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업무환경을 결정,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건물, 업무장소 및 유틸리티<br/>(나) 프로세스장비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<br/>(다) 지원서비스(운송, 통신 등)</p> 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  | 제품 및 제조공정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현장을 정돈,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  |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설계, 개발 및 제조활동에 표현되어야 한다.   |
| <b>3. 설계</b>        |  |
| <b>가. 설계 및 개발</b>   |  |
| (1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 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품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 및 신뢰성결과<br>(나) 제품의 특성, 필요시 시방서<br>(다) 해당되는 경우, 제품의 실수방지를 위한 조치<br>(라) 도면 또는 수학적 기초데이터가 포함된 제품의 정의<br>(마) 제품설계검토 결과    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  | 공정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도면 및 필요시 시방서<br>(나) 제조공정 흐름도 및 레이아웃<br>(다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 결과<br>(라) 관리계획서<br>(마) 작업지침서<br>(바) 공정승인합격기준<br>(사) 제품/공정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출 및 피드백 방법 |
| (4)<br>【종합】  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타당성 확인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쉽게 피아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, 검증,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.   |
| <b>4. 제조</b>        |  |
| <b>가. 구매</b> 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|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선정기준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  | 공급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 관리방법은 달라져야 한다.   |
| <b>나. 생산</b>  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조건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<br>(가)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사용<br>(나) 적절한 장비의 사용<br>(다) 측정의 실행<br>(라)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의 사용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 및 추적성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작업준비는 작업의 첫 가동, 자재의 교체 또는 작업변경시마다 검증되어야 한다.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  | 각 공정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은 양산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 산포, 공정능력 같은 기본적 개념은 조직 전반에서 이용되어야 한다.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품, 제조공정에서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를 고려한 관리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.   |
| (7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위하여 문서화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지침서는 작업장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.   |
| (8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주요공정을 파악하고 기계/장비/치공구의 보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계획된 종체적 예방보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. 시스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계획된 보전 활동<br>(나) 장비, 치공구 및 게이지의 포장 및 보전<br>(다) 주요 제조장비에 대한 교체용 부품의 가용성<br>(라) 보전 활동의 문서화, 평가 및 개선<br>(마) 생산, 수리 또는 폐기와 같은 상태를 규정한 식별 <개정 15.12.10>       |
| <b>5. 자체검사</b>      |  |
| <b>가. 검사방법 및 절차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수행해야 할 검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. 이는 제품생산공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검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한다. 기록에는 제품의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이 나타나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이어야 한다. 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측정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.<br>(가)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.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<br>(나)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<br>(다) 측정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<br>(라) 취급,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, 열화로부터 보호 |
| (5)<br>【주기】         |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보정의 형태로 활용되어져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형태의 측정 및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측정시스템의 변동을 분석하여야 한다.   |
| (7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의 시험실은 다음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시스템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.<br>가) 인원, 장비 및 시설의 적격성<br>나) 시험을 관련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<br>다) 외부시험실은 KS Q ISO/IEC 17025 또는 동등한 인정기관 <개정 13.12.31>  |
| <b>나. 시정 및 예방조치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부적합품 및 의심스런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<br>(가) 부적합의 검토 (고객불평 포함)<br>(나) 시정조치의 결정, 실행 및 기록  |
| (3)                 | 품질방침, 품질목표, 심사결과, 데이터분석, 시정조치, 예방조치 및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 |
| (4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.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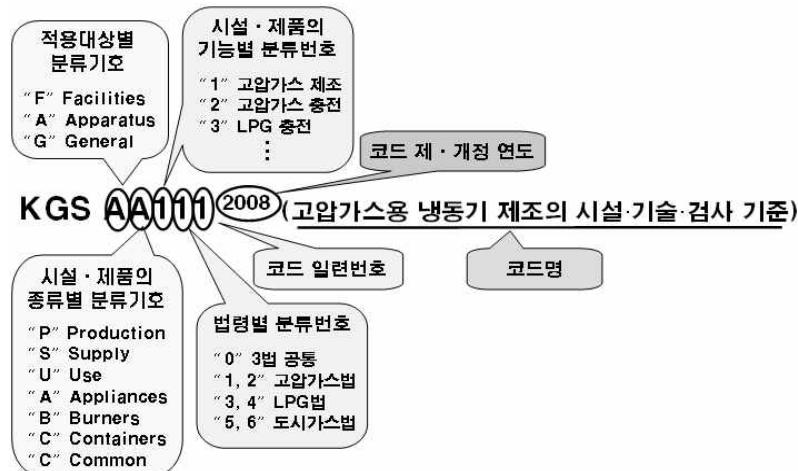
| <b>다. 내부감사</b>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사의 계획, 수행, 감사의 독립성 보장,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.  |
| <b>6. 의무 &lt;개정 15.12.10&gt;</b> |   |
| <b>가. 합격표시</b>                   |   |
| (1) <b>【주기】</b>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합격표시(필증 또는 각인)에 대한 관리규정을 문서화해야 하며, 합격표시의 수령·사용·보관, 폐기 등에 관한 기록은 즉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합격표시(필증 또 각인)는 반드시 권한 있는 직원만이 취급<br>(나) 합격표시는 반드시 계획된 절차에 의하여 최고경영자/경영대리인의 승인을 거쳐 사용<br>(다) 합격표시의 사용내용에 대한 기록<br>(라) 합격표시의 오용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<br>(마) 합격표시는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 |
| <b>나. 안전관리</b>                   |   |
| (1) <b>【종합】</b>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1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|
| (2) <b>【종합】</b>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3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|
| <b>다. 기타</b>                     |   |
|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 |

- [비고] 1. **【종합】**은 종합공정검사 대상에만 적용하는 기준  
 2. **【주기】**는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  
 3. 표시가 없는 조항은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공통 기준

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분류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품(A)<br>(Apparatus)  | 기구(A)<br>(Appliances) | AA1xx | 냉동장치류    | 제조·충전<br>(P)<br>(Production) | FP1xx | 고압가스 제조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2xx | 배관장치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2xx | 고압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3xx | 밸브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3xx | LP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4xx | 압력조정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4xx |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5xx | 호스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5xx |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6xx | 경보차단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6xx | 도시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소기(B)<br>(Burners)   | AA9xx | 기타 기구류   | 시설(F)<br>(Facilities)        | FS1xx | 고압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1xx | 보일러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2xx | LP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2xx | 히터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3xx |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3xx | 렌지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4xx |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9xx | 기타 연소기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5xx |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|
| 용기(C)<br>(Containers) | 탱크류                   | AC1xx | 탱크류      | 판매·공급<br>(S)<br>(Supply)     | FU1xx | 고압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2xx | 실린더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2xx | 고압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3xx | 캔류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3xx | LP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4xx | 복합재료 용기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4xx | LP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AC9xx | 기타 용기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5xx | 도시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저장·사용<br>(U)<br>(Use)        | GC1xx | 기본사항         |
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C2xx | 공통사항         |

KGS AA312 2015

